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1. 7. 14(토)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26일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2001년 7월 11일(제190회정례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기획관리국장 이장길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(2000. 10. 20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이외의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
-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를 간소화
- 일반 재산평가액의 요율을 5%→5%이상으로, 공공용 재산평가액은 2.5%→ 2.5%이상으로, 경작용 재산평가액은 1%→1%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인 적용을 기함
- 전세권 조항의 신설과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시 재산평가액의 대부요율을 5%→1%이상으로 인하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범수)

-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(2000. 10. 20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지방자치단체이외의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고
-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며
- 일반 재산평가액의 요율을 5%→5%이상으로, 공공용 재산평가액은 2.5%→ 2.5%이상으로, 경작용 재산평가액은 1%→1%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인 적용을 기하고
- 전세권 조항의 신설과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시 재산평가액의 대부요율을 5%→1%이상으로 인하하여

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 지역의 분산효과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